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59
----------	-----

2017. 12. 22(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박한범 의원 등 6명
- 나. 발의일자 : 2017년 12월 5일
- 다. 회부일자 : 2017년 12월 6일
- 라. 상정일자 : 2017년 12월 14일
 -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한범 의원)

가. 제안사유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을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여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장애인문화예술인,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등) (안 제2조)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 (안 제3조~제4조)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호)

- 위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을 확대하고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육성하여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안 제4조), 장애인 미술작품 구입(안 제7조) 등을 통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여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문화예술분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 759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박한범 의원 등 6명
발의연월일	2017년 12월 5일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박한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59
----------	-----

발의연월일 : 2017년 12월 5일

발의자 : 박한범, 최광옥, 연철흙
박봉순, 이연구, 임병운

1. 제정이유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을 확대하고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육성하여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장애인문화예술인,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등) (안 제2조)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 (안 제3조~제4조)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 나. 관련부서 협의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와 협의함
- 다. 입법예고 : 2017. 11.21 ~ 11. 26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문화예술인”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에서 문화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도지사는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육성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육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는 적절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문화예술단체) 장애인문화예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도내에 소재한 단체
2. 최근 2년간 전시, 교육 등 문화예술 분야의 정기적인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3. 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
4. 역량 있는 우수 장애인 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장애인 미술작품 구입) 도지사는 장애인 미술작품을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 대상작품은 도내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장애인의 창작품이어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와 범위, 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